

의안번호	제268호
의결 연월일	2019년 월 일 (제 회)

**충청북도 학생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**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9년 10월 8일

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

# 충청북도 학생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 
번호

268

제출연월일 : 2019년 10월 8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 1. 제안사유

- “학생근로활동”을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“학생아르바이트”로 변경하여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고,
-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제명 변경
  - 현행 : 충청북도 학생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
  - 개정 : 충청북도 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
- 방학동안 도내 대학생 및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“학생근로활동”을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“학생아르바이트”로 변경하여 도민의 이해도 제고
- 대상자의 범위를 “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자녀”에서 “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 이상 본인이나 부 또는 모가 도에 주소를 둔 대학생 및 고등학생”으로 변경하여 대상자 범위 확대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해당없음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## 충청북도 학생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학생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충청북도 학생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”를 “충청북도 학생아르바이트 운영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근로활동(이하 “근로활동”이라 한다)지원”을 “아르바이트 운영”으로 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대학생·고등학생 아르바이트(이하 “아르바이트”라 한다)란 대학생 또는 고등학생이 도정에 참여함으로써 도정을 이해하고, 학비 마련에 도움을 받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조(대상자) 아르바이트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 이상 본인이나 부 또는 모(보호자를 포함한다)가 도에 주소를 둔 대학생 및 고등학생
2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

제4조 중 “근로활동은”을 “아르바이트는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, 제6조, 제7조 및 제8조 중 “근로활동”을 각각 “아르바이트”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부모”를 “본인이나 부 또는 모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 대학생·고등학생 <u>근로활동(이하 “근로활동”이라 한다)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아르바이트 운영</u>----- -----</p>
<p>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<u>근로활동이라 함은 대학생 또는 고등학생이 학업을 위하여 학비를 버는 일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</u></p>	<p>제2조(용어의 정의) ---- <u>대학생·고등학생 아르바이트(이하 “아르바이트”라 한다)란</u>----<u>도정에 참여함으로써 도정을 이해하고, 학비 마련에 도움을 받는</u>-----</p>
<p>제3조(대상자) <u>근로활동 대상자는 부모(보호자 포함)가 도내에 주소</u> <u>를 두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</u> <u>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로</u> <u>한다</u></p> <p>1. <u>대학생은 4년제 정규대학 및 전문대학 재학생</u></p> <p>2. <u>고등학교 재학생</u></p> <p>3. <u>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</u></p>	<p>제3조(대상자) <u>아르바이트 학생은</u> <u>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</u> <u>하는 사람으로 한다</u></p> <p>1. <u>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직전 6개월 이상 본인이나 부 또는 모(보호자 포함)가 도에 주소를 둔 대학생 및 고등학생</u></p> <p>2. <u>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</u></p>
<p>제4조(운영시기) <u>근로활동은 매년 동·하계 방학기간 동안에 운영</u> <u>되 필요시 수시로 운영할 수 있</u></p>	<p>제4조(운영시기) <u>아르바이트는</u>----- ----- -----</p>

다	--
제5조(신청 및 절차) ① <u>근로활동</u> 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제반 구비 서류를 작성하여 <u>부모의 주소지 읍·면·동장</u>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	제5조(신청 및 절차) ① <u>아르바이트</u> ----- --- <u>본인이나 부 또는 모의</u> ---
② (생       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6조(선발) 도지사는 당해 연도 수요인원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자 중 별도로 정하는 선정기준에 적합 자를 <u>근로활동</u> 대상자로 확정·선발한다.	제6조(선발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아르바이트</u> ----- -----
제7조(근무지) <u>근로활동</u> 학생은 도본청 및 소속기관, 도의회사무처에 근무하게 하거나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	제7조(근무지) <u>아르바이트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제8조(보상금) <u>근로활동</u> 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	제8조(보상금) <u>아르바이트</u> ----- ----- -----
제9조(시행지침) (생    략)	제9조(시행지침) (현행과 같음)